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년월일 : 1995. 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의 안 번 호	16
------------	----

□ 제안이유

- 문화예술진흥법의 전문개정('95. 1. 5)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의 폐지('95. 7. 13)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함과 아울러 도 및 도교육청의 직제변경 등에 의거 동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동조례 제1조 인용조문중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,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12조를 삭제함.
- 도 교육청 직제변경에 따라 조례 제2조중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함.

-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정기회의는 사무형편과 필요정도를 감안 분기별 1회를 년 1회로 함.
- 도의 담당과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9조제2항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함.

□ 붙임

1.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2. 신·구조문 대비표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'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12조'를 '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'으로 한다.

제2조제3항중 '도 교육청 학무국장'을 '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'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'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'를 '정기회의는 년 1회'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'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'를 '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'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